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7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 확대 혹은 폐지 등(이상희의원안, 권영 세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최은석의원안)	3
2.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최은석의원안)	17
3. 상속세 · 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박충권의원안, 유상범 의원안, 최은석의원안, 박수민의원안)	25
4.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유상범·최은석·박수민의원안)	37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8. 5.
- (3) 회 부 일 : 2025. 8.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혼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3조제3항 삭제, 제12조제8호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제19조 및 제53조제1호 삭제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 확대 혹은 폐지 등(이상회의원안, 권영세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12조)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등 - (신 설) □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공제 - <u>최대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u>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A-B+C) \times D - E$ A: 비과세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배우자 상속 추가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u>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최은석의원안)</u>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 확대, 삭제 ○ (현행과 같음) - <u>한도 삭제(권영세·박충권의원안)</u> - <u>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확대: 배우자의 기여분 고려 추가 상향(이상회의원안)</u>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A-B+C) \times D - E + F$ A: 비과세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F: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 행	개정안
☐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정비 ○ 상속세 과세가액(제13조)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 일괄공제(제21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 재해손실 공제(제23조)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제30조)	☐ 중복공제 배제 등(권영세의원안) ○ 배우자 사전 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미가산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우자 상속분 제외 ○ 배우자에 대한 장애인 공제 미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미적용 ○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제외 ○ 재해손실 공제대상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제외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우자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제외

* 이상회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71), 권영세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9015)
박충권의원안 2025. 3. 28. 발의(의안번호 9469), 최은석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6)

☐ 4건의 개정안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는 이를 비과세로 하거나 상속공제 최대한도를 확대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이상회의원안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배우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상향하려는 것이고

권영세의원안, 박충권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30억원 및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폐지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전체를 공제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려는 것임.

추가로, 권영세의원안은 ①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 물적공제 대상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제외하도록 하고, ②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배우자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존 공제 제도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③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도록 한 부분¹⁾은 배우자 상속 시에는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상속 재산가액이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도 합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²⁾.

최은석의원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재산을 비과세하려는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권영세의원 대표발의, 9015호)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 ----- ----- ----- ----- ----- -----.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

2) 법 제13조에서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사전 증여를 통해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로,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게 되면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므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필요성이 적음.

만약,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면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둔다면 ①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하지 않고 상속한 경우는 전액 공제되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으나, ②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증여한 재산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어 양자 간 세액차이가 발생하게 됨.

으로, 전액공제의 형식으로 과세하지 않는 권영세의원안, 박충권의 원안과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그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³⁾.

□ 현행법⁴⁾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억원 혹은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이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수유자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10년 이내 증여 혹은 사후 상속받은 총 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⁵⁾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른 인적공제보다 비교적 높은 한도를 허용하

3)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상속공제가 차감됨.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과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최은석의원안은 비과세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인 배우자간 상속에 대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유사한 효과가 있음.

상속세 과세표준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text{한도금액} = (A - B + C) \times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5)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배우자 간 부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 수평적 자산 이전으로 해당 상속재산은 추후 자녀 세대로 이전될 때 과세될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후 남아 있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 보장 측면을 고려한 것임.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A)	2억원 (비거주자에게도 적용)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최대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 최소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더라도 5억원 공제
기타 인적공제 (B)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잔여연수 연로자(65세 이상)공제: 5,000만원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통계청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A)와 기타 인적공제(B) 합계액 5억원 미만 시 5억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1990년 이전까지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가 1991년부터 1994년 이전까지는 1억원에 결혼연수에 비례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하였고, 1995년에는 10억원 한도로 실제상속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부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 혹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두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배우자 상속공제 연혁]

구분	공제금액
~1990	4000만원
1991~	1억원+(결혼연수 × 600만원)
1994~	1억원+(결혼연수 × 1,200만원)
1995~	① 또는 ② 선택 ① : 1억원+(결혼연수 × 1,200만원), ② : 실제상속가액 (10억원 한도)
1997~ 현재	실제상속가액,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2024년 기준 배우자 상속공제는 10,589명에 대하여 8조 2,377억원 공제되었으며, 최근 5년간 배우자 상속공제 결정 인원 수와 공제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배우자 상속공제 현황]

(명,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피상속인 수	5,341	6,551	8,032	10,115	10,589
공제금액	39,755	49,206	61,745	79,502	82,377

자료: 국세청

□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공제한도를 확대 혹은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가 있음.

첫째, 배우자 간 상속은 동일 세대 간 수평적 자산 이전으로 추후 자녀 세대가 해당 자산을 상속받을 때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자 하는 상속세 기능 측면에서는 과세 필요성이 직계비속의 상속과 같이 크지 않은 반면, 배우자 상속 시 과세하면

남은 배우자의 사망 후 자녀가 상속받을 때 또 한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 단계에서는 상속세를 과세하면 안된다는 것임.

이는 상속세가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무상 이전될 때 과세되어야 하고 동일세대에 속하는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에 근거하고 있음.

이러한 ‘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의 관점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권영세의원안, 박충권의원안과 배우자간 상속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는 최은석의원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둘째, 현행의 공제한도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음.

부부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는 각 배우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일정한 지분이 있고, 그 지분 한도 내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배우자 간 상속을 혼인생활 기간 중에 함께 노력하여 축적한 공동재산의 지분을 분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부부공동재산의 지분분할론’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

하여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할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⁶⁾.

그런데, 이러한 ‘부부공동재산의 지분분할론’의 관점에서는 현행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 중 본인의 지분을 가져오는 것임에도 과세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안은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낮거나 상속재산가액이 공제한도액(30억원) 보다 커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에 해당함에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셋째,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공제액 한도의 확대를 통한 세 부담의 적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 금액은 1997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1997년 물가지수는 56.977, 2024년 물가지수는 114.18로서 실질적인 공제 한도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넷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다수 국가에서 생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6)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생략)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OECD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방식 및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현황]

구분	과세방식	최고세율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한국	유산세	50%	배우자 30억원 자녀 5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가능
덴마크	유산세	15%	배우자 비과세 자녀 321,700크로네(≒ 6천1백만원)
영국	유산세	40%	배우자 비과세 자녀 50만파운드(≒ 8억3천만원)
미국	유산세	40%	시민권자인 배우자 비과세 증여세와 통합공제 1,292만달러(≒ 166억원)
벨기에 (브뤼셀)	유산취득세	30%	배우자·자녀 각 1만5천유로(≒ 2천1백만원)
칠레	유산취득세	25%	배우자·자녀 각 4만3천750달러(≒ 5천6백만원)
핀란드	유산취득세	19%	배우자·자녀 각 2만유로(≒ 2천8백만원) * 배우자에 관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경우 9만유로 추가
프랑스	유산취득세	45%	배우자 비과세 자녀공제 10만유로(≒ 1억4천만원)
독일	유산취득세	30%	배우자공제 50만유로(≒ 7억1천만원) 자녀공제 40만유로(≒ 5억7천만원)
그리스	유산취득세	10%	배우자·자녀 각 15만유로(≒ 2억1천만원)
헝가리	유산취득세	18%	배우자·자녀 비과세
아일랜드	유산취득세	33%	배우자 비과세 자녀 335,000유로(≒ 4억8천만원)
이탈리아	유산취득세	4%	배우자·자녀 각 1백만유로 (≒ 14억2천만원)
일본	유산취득세	55%	배우자 세액공제* 1억6천만엔 (≒ 14억8천만원) 자녀공제 6백만엔(≒ 5천5백만원) 기초공제 3천만엔(≒ 2억7천만원) * 법정상속분과 1억6천만엔 중 큰 금액 상당 세액을 공제
리투아니아	유산취득세	10%	배우자·자녀 비과세

구분	과세방식	최고세율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룩셈부르크	유산취득세	16%	배우자 비과세 자녀 법정상속분 비과세
네덜란드	유산취득세	20%	배우자 723,526유로*(≒ 10억3천만원) 자녀 22,918유로(≒ 3천2백만원) * 연금수급권에 따라 186,915유로까지 감액
폴란드	유산취득세	7%	배우자·자녀 10,434즈워티(≒ 3백만원)
포르투갈	유산취득세	10%	배우자·자녀 비과세
슬로베니아	유산취득세	-	배우자·자녀 비과세
스페인	유산취득세	34%	배우자·자녀 각 15,956유로(≒ 2천3백만원)
스위스	유산취득세	50%	배우자·자녀 비과세

*출처: Ernst&Young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부부공동재산의 지분분할론’에 근거한다면 “공동재산 중 배우자의 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 혹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 부의 무상이전에 따라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증여세와의 관계상 적절할 수 있음.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⁷⁾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폐지하거나 비과세하는 개정안의 경우 피상속인 특유재산이나 공동재산 중 배우자의 지분이 아닌 부분까지 배우자는 전액 무상으로 받게 될 수 있는 것임.

둘째, 배우자 공제 최고한도 금액(30억원)의 폐지 혹은 비과세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 중에서도 현행 30억원의 공제수준으로는 부족할 만큼 상속재산이 많은 일부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고, 일정 세수감소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중 30억원 금액 한도가 적용된 건은 총 1,122건으로, 해당 기간 전체 배우자 상속공제 결정 건 40,628건 대비 2.7% 수준임.

7)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별 결정 건 수]

공제금액 규모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배우자 상속공제 전체 결정건수	40,628	5,341	6,551	8,032	10,115	10,589
5억원	23,872	3,416	3,960	4,686	5,727	6,083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9,870	1,096	1,622	2,011	2,508	2,633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648	554	621	884	1,310	1,279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116	137	155	223	292	309
30억원	1,122	138	193	228	278	285

자료: 국세청

세수효과는 향후 배우자의 재산상속 여부, 상속재산 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⁸⁾,

30억원 금액한도가 적용된 상속 건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2024년도 기준 평균 63.3억원)을 고려할 때 일정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8) 권영세의원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배우자 상속재산 구간 별 배우자 상속재산 현황(30억원 공제한도 적용 건)]

(건, 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구간별	2021			2022			2023			2024		
	건	상속 재산	평균	건	상속 재산	평균	건	상속 재산	평균	건	상속 재산	평균
30억 이상 50억 이하	137	4,802	35.1	154	5,493	35.7	193	6,900	35.8	205	7,386	36.0
50억 초과 80억 이하	34	2,144	63.1	37	2,239	60.5	53	3,221	60.8	49	2,995	61.1
80억 초과 100억 이하	5	436	87.2	9	808	89.8	13	1,143	87.9	11	986	89.6
100억 초과	17	3,198	188.1	28	104,605	3,735.9	19	11,772	619.6	20	6,683	334.2
합계	193	10,581	<u>54.8</u>	228	113,144	<u>496.2</u>	278	23,035	<u>82.9</u>	285	18,050	<u>63.3</u>

자료: 국세청

셋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있었다면 자녀에게 상속하였을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우자가 상속하게 될 경제적 유인이 되고, 부의 젊은 세대로의 이전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당장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면 기업승계가 지연되거나 주식 명부상 최대주주와 실질 경영자가 상이하게 되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넷째, 이상회의원안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 시 「민법」

제1008조의2⁹⁾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따라서, 공통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세법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 규정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6조)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등 - (신 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배우자 증여 추가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u>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u>	☐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시 배우자 제외 ○ 직계존비속에 <u>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u>
☐ 배우자 등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 배제 추정(제47조제3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 배제 추정 대상에서 배우자 제외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 증여재산 공제(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u>6억원</u>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삭제 ○ 증여재산 공제 한도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최은석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6)

□ 개정안은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46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추가함으로써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 제44조(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현행법 제47조제3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 배제 추정), 현행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한도)제53조) 규정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법¹⁰⁾은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거주자가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③ 직계비속, ④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친족 중 ‘4촌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각각 ① 6억원, ② 5천만원, ③ 5천만원, ④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개정연혁]

증여자	1999~2002	2003~2007	2008~2013	2014~2015	2016.1.1.~
배우자	5억원	3억원	6억원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천만원(15백만원)			5천만원(2천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5천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1천만원

배우자간 증여 건수는 2024년 기준 4,272건이고, 증여재산가액은 2024년 2조 1,461억원임.

[배우자간 증여건수 및 증여재산가액 현황]

(건,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 건수	5,532	9,058	6,218	5,564	4,272
2. 증여재산가액	28,757	53,472	36,006	28,274	21,416

자료: 국세청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부부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는 관점에서 부부간 재산 이전에 대한 과세는 부부재산 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족 부양, 일상가사의 대리, 생활관계의 편의 등을 위한 조세회피 목적 없는 자금의 이체는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있을 수 있는데

형식상 부부 일방의 명의로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부양, 일상가사 등의 기여분에 대한 정도를 과세관청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부부간 재산의 명의 이전에 대해 엄격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부재산 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부부가 경제활동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현실에서도 부부간 재산 이전의 규모나 그 형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2024년 부부 간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구간이 증여건수 및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8%, 63.9%에 달하고 있음.

[2024년 배우자 간 증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증여건수	증여건수 비중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비중
계	4,272	100%	2,141,612	100%
1억 이하	2	0.05%	32	0.00%
3억 이하	4	0.09%	283	0.01%
5억 이하	3	0.07%	911	0.04%
10억 이하	3,333	78.02%	1,367,762	63.87%
20억 이하	778	18.21%	446,406	20.84%
30억 이하	90	2.11%	88,708	4.14%
30억 초과	62	1.45%	237,510	11.09%

자료: 국세청

둘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할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데, 혼인 중 재산의 명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혼인생활로 인해 과세상 불이익을 받는 차별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¹¹⁾하고 있음.

11)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생략)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셋째,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측면도 있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2008년부터 6억원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그간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감소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81.7에서 2024년 114.2로¹²⁾ 약 37% 증가하였는데,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감소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음.

넷째, 배우자 간 증여는 동일 세대 간 수평적 자산의 이전으로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과세의 필요성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와 같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부부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는 부부간 재산의 자유로운 이전과 공유를 전제로 하는, 부부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는 관점에 적합한 것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과 개인단위주의 과세체계¹³⁾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우리 민법¹⁴⁾은 부부간에 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12) 통계청

13)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individual unit system), 소비단위주의(consumption unit system)으로 분류되고, 소비단위주의는 소비단위 크기에 따라 부부단위주의, 가족단위주의로 나뉨.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72p 참조. 삼일인포마인 2025.2

재산제로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세법」¹⁵⁾은 소비단위주의(부부 또는 가족 단위 과세)가 아닌 개인단위주의 과세체계를 채택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이와 같이 개인별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체계하에서 만약 부부간 재산 이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부부간 소득원천의 자유로운 이전 및 적정한 분배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가령,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일방의 예금, 주식 등을 소득이 없거나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금융소득(이자, 배당)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점에서 부부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는 부부 단위 과세방식으로의 「소득세법」 개편 시에 함께 논의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14)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15)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둘째,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는 배우자 간 상속세 비과세 개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

배우자 간 상속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간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면 생전에 배우자에게 세 부담 없이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임.

문 의 처
02)6788-5161

3. 상속세·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박충권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최은석의원안, 박수민의원안)

현행	박충권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최은석의원안																																										
☐ 상속세 세율 (제26조) ☐ 상속세 세율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 이하</td><td>10</td></tr><tr><td>~ 5억원</td><td>20</td></tr><tr><td>~ 10억원</td><td>30</td></tr><tr><td>~ 30억원</td><td>40</td></tr><tr><td>30억원 초과</td><td>5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 이하</td><td>10</td></tr><tr><td>~ 5억원</td><td>20</td></tr><tr><td>~ 10억원</td><td>30</td></tr><tr><td>10억원 초과</td><td>4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 이하</td><td>10</td></tr><tr><td>~ 5억원</td><td>15</td></tr><tr><td>~ 10억원</td><td>20</td></tr><tr><td>~ 30억원</td><td>25</td></tr><tr><td>30억원 초과</td><td>3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15	~ 10억원	20	~ 30억원	25	30억원 초과	30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 이하</td><td>10</td></tr><tr><td>~ 30억원</td><td>20</td></tr><tr><td>30억원 초과</td><td>3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30억원	20	30억원 초과	3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15																																												
~ 10억원	20																																												
~ 30억원	25																																												
30억원 초과	3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30억원	20																																												
30억원 초과	30																																												
☐ 증여세 세율 (제56조) ☐ 증여세 세율: 제 26조의 세율 적용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박수민의원안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10</td></tr><tr><td>~ 5억원</td><td>15</td></tr><tr><td>~ 10억원</td><td>20</td></tr><tr><td>10억원 초과</td><td>25</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 5억원	15	~ 10억원	20	1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 5억원	15																																												
~ 10억원	20																																												
10억원 초과	25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박충권의원안 2025. 3. 28. 발의(의안번호 9469), 유상범의원안 2025. 7. 22. 발의(의안번호 11617), 최은석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6), 박수민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51)

□ 4건의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함으로써 상속인과 수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충권의원안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여,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시 40%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유상범의원안은 각 과세표준별로 5%p~20%p까지 세율을 인하하여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려는 것이며, 최은석의원안은 과표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면서,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려는 것이고, 박수민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조정하면서, 각 과세표준별로 5%p~25%p까지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증여세”라 함)의 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연혁]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5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0.5억원~2.5억원	20%	1억원~5억원	20%	1억원~5억원	20%
2.5억원~5.5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5억원 초과	40%	10억원~50억원	40%	10억원~30억원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세입확충이라는 조세 본유의 국고기능 이외에 복합적인 경제적·사회정책적 기능의 수행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속세제에 대하여는 다양한 찬·반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① 상속세는 과세기법의 발달로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 조세로서의 기능이 예전보다 감소한 반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사망 시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로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재산을 일궈온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자의 것보다 누진적으로 많이 과세함으로써 자본축적, 자산의 이전 및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여 경제활력을 저해하므로 폐지하거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② 상속세는 소득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이 아닌 상당한 재산을 무상취득한 일부 부유한 상속인에 대한 과세이므로 중복과세가 아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공정한 경쟁과 교육의 기회가 약화되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의 결속력과 역동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므로 상속세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이러한 상속세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일차적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¹⁶⁾고 하며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인정하였으나, 현실에서 상속세의 이러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끊임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상속세제의 부담 완화 주장과 그 반대 입장을 정리함.

□ 먼저, 상속증여세율의 인하 및 세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하여 지속적인 기업경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고용의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상속세 부담이 클수록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일부 실증 연구¹⁷⁾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결과¹⁸⁾에 근거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음.

16)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17)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 10., 송헌재·조하영)
“Inheritance Law and Investment in Family Firms”(2010, Ellul·Pagano·Panunzi)

18) 수출기업 799개 중 74.3%가 가업승계 이슈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중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지적 (한국무역협회, '24.1월)

수출기업 799개 중 42.2%가 상속세, 증여세 납부부담 등 제반 가업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국무역협회, '24.1월)

중소기업 625개 중 65.3%가 기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에서 ‘높은 세금부담’을 지적 (중소기업중앙회, '23.4월)
30~40대 벤처 CEO 140명 중 대부분이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 (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 (경총, '23.10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과도한 세부담은 많은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부유층의 생산동기를 저하시켜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로 인한 생산력 증대 및 혁신에 대한 기회의 제약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따른 저소득층의 후생 증대 기회마저 축소할 수 있다는 것임.

둘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은 2000년에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으로 물가상승, 주택가격 상승 등 그간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세부담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소비자 물가지수	63.151	74.413	86.373	94.861	100	114.18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주택 매매가격지수]

구분	2000.1	2005.1	2010.1	2015.1	2021.6	2025.1
종합주택	46.0	60.8	76.4	84.9	100.0	96.2
아파트	35.8	55.2	70.8	82.3	100.0	93.4

*종합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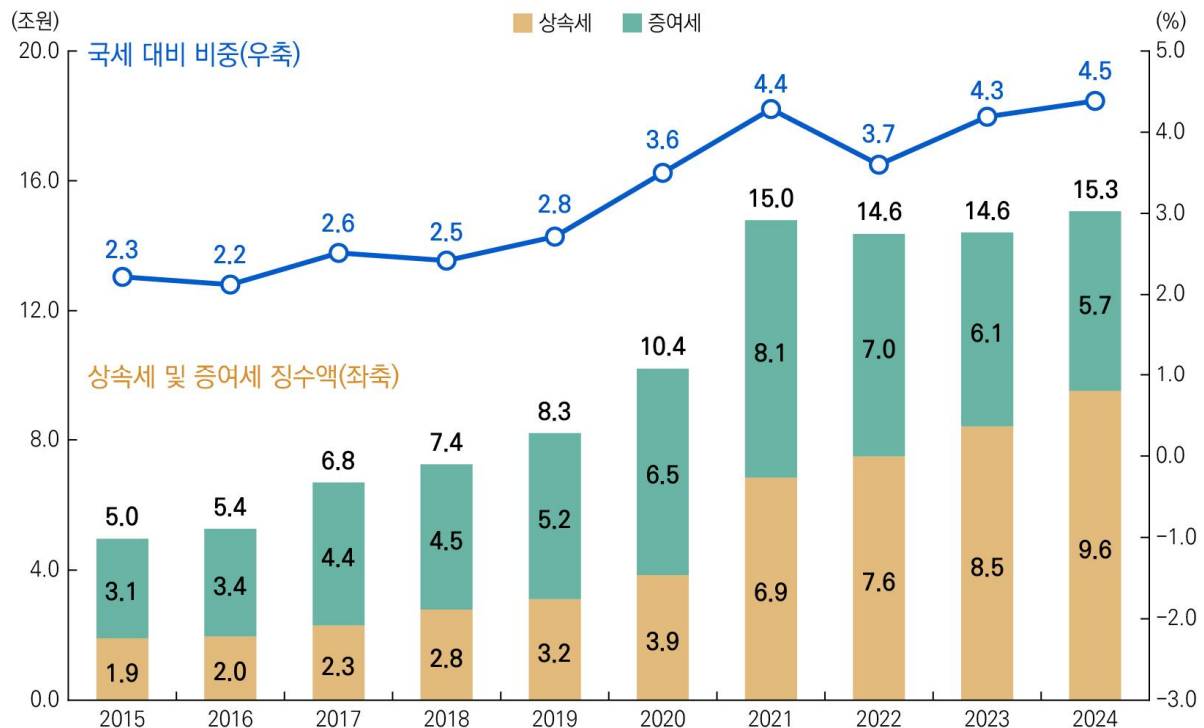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6월=100 기준

한편, 최근 10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5.0조원에서 2021년 15.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연간 15조원 내외의 실적을 보이며 2024년 15.3조원이 집계되고 있음¹⁹⁾.

19)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336p.

이는 그간 큰 변화가 없었던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상속 공제 수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²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셋째, OECD 등 국제비교 시에도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이 높아 자산가들의 해외이민, 기업의 해외이전 등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임²¹⁾.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경우 6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고,

20) 과세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재산은닉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점도 있을 것임.

21) KNN, “세계 최고 ‘상속세율’ … 경영권 팔거나 해외로”, 2018. 11. 21.

OECD 가입국 38개국 중 상속세를 두고 있는 24개 국가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평균 26%로 조사됨²²⁾.

또한,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은 2023년 기준 0.7%로, OECD 평균 0.1%에 비해 0.6%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 또한 2023년 기준 2.3%로 OECD 평균 0.4%에 비해서는 1.9%p 높고, G7 국가 평균 0.8%에 비해서도 1.5%p 높은 것으로 조사됨²³⁾.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0.3	0.4	0.5	0.7	0.7	0.7	0.4
OECD 평균		0.1	0.1	0.1	0.1	0.1	0.1	0.0
G7	G7 평균	0.2	0.2	0.3	0.3	0.3	0.3	0.1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5	0.6	0.7	0.8	0.7	0.8	0.3
	독일	0.2	0.2	0.3	0.3	0.2	0.2	0.0
	이탈리아	0.0	0.0	0.0	0.0	0.1	0.0	0.0
	일본	0.4	0.4	0.4	0.5	0.5	0.5	0.1
	영국	0.2	0.2	0.2	0.3	0.3	0.3	0.1
	미국	0.1	0.1	0.1	0.1	0.2	0.1	0.0

주 : 2023년 OECD 평균은 호주와 그리스를 제외한 평균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2) 일본 55%, 대한민국 50%(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 프랑스 45%, 미국·영국 40%, 독일 30%.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 26%, 기획재정부

23)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332-333p.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3	1.6	1.9	2.4	2.1	2.3	1.0
OECD 평균		0.3	0.4	0.4	0.4	0.4	0.4	0.1
G7	G7 평균	0.6	0.7	0.7	0.8	0.8	0.8	0.2
	캐나다	0.0	0.0	0.0	0.1	0.1	0.1	0.1
	프랑스	1.1	1.4	1.5	1.7	1.6	1.7	0.6
	독일	0.5	0.5	0.7	0.7	0.6	0.6	0.1
	이탈리아	0.1	0.1	0.1	0.1	0.1	0.1	0.0
	일본	1.2	1.3	1.3	1.5	1.5	-	0.3
	영국	0.7	0.7	0.8	0.8	0.8	0.8	0.1
	미국	0.5	0.4	0.5	0.5	0.6	0.6	0.1

주: 1. 2023년 OECD 평균은 호주, 그리스 및 일본을 제외한 평균이며, G7 평균은 일본을 제외한 평균임

2. 일본은 2022년과 2014년 차이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회원국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4개국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이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오스트리아·체코·이스라엘 등의 7개국은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²⁴⁾.

상속세 부담의 완화에 대한 주장은 국제조세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자산가의 이민과 기업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임.

24)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331p.

[OECD 주요국의 상속 관련 과세 체계]

구분		국가
상속증여세 과세 국가	유산취득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20개국
	유산세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자본이득세 부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 소득세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

자료 : IBFD - Tax Research Platform 국가별 자료 참조

□ 반면, 상속증여세를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하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자산이 가장 적은 1분
위는 평균 - 669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평균 2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²⁵⁾는 2017년 0.584에서 2024
년 0.612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5)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4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전체	31,572	100.0	44,894	100.0
순자산 1분위	-666	-0.2	-669	-0.1
순자산 2분위	2,565	0.8	3,067	0.7
순자산 3분위	6,187	2.0	7,689	1.7
순자산 4분위	10,622	3.4	13,365	3.0
순자산 5분위	15,912	5.0	20,185	4.5
순자산 6분위	22,050	7.0	28,280	6.3
순자산 7분위	29,536	9.4	38,803	8.6
순자산 8분위	40,131	12.7	55,032	12.3
순자산 9분위	57,393	18.2	83,629	18.6
순자산 10분위	131,916	41.8	199,516	44.4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순자산 지니계수	0.584	0.588	0.597	0.602	0.603	0.606	0.605	0.612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둘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 부담 수준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소득세와 상속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이를 통해 축적한 재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세제로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재분배기능 측면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

담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조세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부담 수준은 높지만, 소득세 부담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것임.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단위: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3.8	4.8	5.2	6.1	6.6	5.7	1.9
OECD 평균	7.8	8.0	8.3	8.3	8.2	8.2	0.4
G7 평균	9.3	9.7	10.0	10.2	10.3	10.1	0.7

주: 1. 한국의 GDP는 구계열 기준(2015년 기준년)으로, 2024년 공표된 신계열(2020년 기준) 수치와 차이 있음
 2.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제외한 36개국 대상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 국제비교]

(단위: %, %p)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차이 (‘23-’14)
한국	16.3	17.5	18.8	20.4	20.5	19.8	3.6
OECD 평균	22.8	23.5	24.1	23.7	23.6	23.6	0.8
G7 평균	27.4	28.1	28.6	28.7	28.8	30.2	2.8

주: 1. OECD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 그리스, 일본 제외한 35개국 평균임, 그 외는 38개국 평균
 2. G7 평균의 2023년 수치는 아직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일본 제외한 6개국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셋째,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의 완화 및 기업승계 지원이 부유층의 투자 및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재분배기능의 약화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구성원 간 기초부존자원의 차

이가 ‘기회의 평등’을 제약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따른 불공평이 사회적 결속력과 역동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일부 연구결과²⁶⁾ 등을 실증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활한 순환과 작동에 필수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경제주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경제주체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불공평으로 인한 기회의 제약이 사회적 창 의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관하여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세 부담의 적정성, 국제적 동향, 상속증여세율 인하가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26)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

4.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유상범·최은석·박수민의원안)

현행	개정안
☐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3조)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 ○ <u>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재산가액 평가 시 일정 비율 할증</u> - 할증률: 100분의 20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 제>

* 유상범의원안 2025. 7. 22. 발의(의안번호 11617), 최은석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6) 박수민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51)

☐ 3건의 개정안은 최대주주등²⁷⁾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²⁸⁾에 따르면 주식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

27)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고,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됨²⁹⁾.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은 최대주주³⁰⁾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동 제도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로 불리는데, 일반주주의 주식과 달리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 가치를 재산가액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

□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미인식가치이론’과 ‘사적이익이론’이 있음.

미인식가치이론은 현재 회사가 잘못된 경영으로 내재된 잠재력에 비해 시장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권을 획득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기대이익 증가분의 현재가치만큼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임.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9) 비상장주식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 또는 감정평가 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함.

30) 최대주주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사적이익이론은 경영권을 획득하면 회사의 재산을 사익목적을 위해 유용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사익 증가분의 현재가치만큼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1993년에 도입하여, 처음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1997년 이후 모든 법인의 주식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 것은 2000년부터인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클수록 경영권 프리미엄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할증률을 50% 경감하여 적용하였음. 중소기업은 주식의 소유집중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 적용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임.

이후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2005년부터 2019년말까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³¹⁾ 2019년 세법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삭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반영하였음.

2020년부터는 비(非)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증율을 20%로 단일화하였고, 2023년부터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연도별 할증평가율 연혁]

구분	'93.1.1	'00.1.1.	'03.1.1.~'19.12.31.		'20.1.1.이후
			중소기업	중소기업외	
지분율 50% 이하	10%	20%	10%	20%	20%
지분율 50% 초과		30%	15%	30%	

주 1) 2005년부터 중소기업 할증평가 적용 배제

2)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할증평가 적용 배제

자료: 기획재정부

□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³²⁾,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³³⁾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은 엄격하여 기업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한 높은 세부담은 기업인으로 하여금 경영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재원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등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둘째, 상속·증여시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에서의 인수합병거래와 달리 보아야 하

32) 일본: 55%, 대한민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기획재정부)

33)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세 부담은 2022년 기준 0.7%로 OECD 평균 0.2%에 비해 0.5%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도 2022년 기준 2.1%로 OECD 평균 0.4%에 비해서는 1.7%p 높고, G7 국가 평균 0.6%에 비해서도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 등 경제활동 기여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임.

셋째, 일률적인 할증률(2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할증평가 방식은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일률적인 할증평가율을 법률에 규정하여 적용하는 국가는 파악되지 않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일반주식보다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다는 것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상당 수 거래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³⁴⁾.

둘째, 헌법재판소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

34) 2012년~2020년 중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계약에 대한 표본 분석결과 28%~41%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황선필,조형태,윤재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2호 2022년 6월).

고 있으므로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³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2008. 12. 26. 2006헌바115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 적용일 뿐, 이러한 가산율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의 처

02)6788-5161

35) 헌재 2002헌바65, 2003. 1. 30. 판결
헌재 2006헌바115, 2008. 12. 26. 판결